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4. 28 선고 2020가단30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3. 31

판결 선고 2021. 4. 28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,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. 8. 2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7. 8. 28. 접수 제18392호로 마친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16. 5. 1.부터 2017. 7. 30.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 C에게 9,5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. 8. 29.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7.12. 31.로, 이자를 연 3%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같은 날 공증인가 법 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3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소외 C은 2017. 8. 28.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 중 1/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1/2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2. 사해행위의 성립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2017. 8. 28. 당시 소외 C에 대하여 9,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, 소외 C이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 중 1/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C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, 피고가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,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/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,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04. 11. 2. E으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F아파트 G호 아파트를 매수하고,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4. 11. 25. 채무자를 피고, 채권최고액을

2,400만 원,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로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3. 7. 12. 건축허가를, 2014. 6. 21. 사용승인을 각 받은 사실,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. 7. 29. 피고를 채무자, 채권최고액 143,000,000원, 근저당권자를 I조합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, 이 사건 건물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2014. 7. 4. C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/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손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손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/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하선화

별지